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5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이연희·이광희·허종식

박상혁 • 복기왕 • 윤종군

홍기원 · 서미화 · 한민수

정준호 · 정성호 · 한준호

이춘석 • 박홍배 • 이정문

김남희 • 김정호 • 김윤덕

박 정 · 문금주 의원

(20학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 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 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선명령 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 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.

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,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 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,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9조 등).

법률 제 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"를 "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,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·권익보호 및 처 우개선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

제4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

제5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(개선명령 및 권고) 국토교	제39조(개선명령 및 권고)		
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			
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, <u>소비</u>	<u>소비</u>		
<u>자의 편의를 도모하기</u> 위하여	자의 편의를 도모하며, 생활물		
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	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ㆍ		
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	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		
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			
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			
수 있다.		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의3.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		
	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		
	대책의 마련		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		
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49조(벌칙)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		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			
의 벌금에 처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		
	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		

제5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~ 12. (생 략)
- 1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
- 14. (생략)
- ② (생략)

<u>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</u> 제51조(과태료) ①
1. ~ 1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<u>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</u>

- 1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